

감정평가서

건명	김은정 소유물건 (2025타경62424)
감정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김응석
평가서번호	D032502-2-00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
(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기북부지사



DONGIN APPRAISAL CO., LTD (T:031-907-5335 F:031-907-5225)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금 명 섭

광 명 섭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금 명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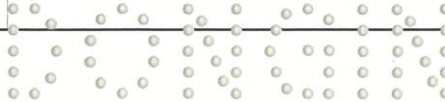
감정평가액	사역이천이백만원정(₩422,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김응석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15계		기준가치	시 장 가 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은정 소유물건 (2025타경62424)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3.12	2025.03.04~ 2025.03.12	2025.03.12	
감 정 평 가 내 용	공 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422,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 422,000,000 .-

심
사
확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方 勝 晳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역(경의중앙선)" 동측 인근에 위치한 하늘마을 제 207동 제6층 제606호 건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기준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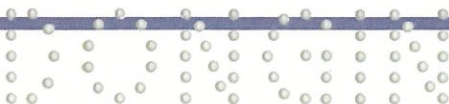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일 2025년 03월 12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03월 04일 ~ 03월 12일에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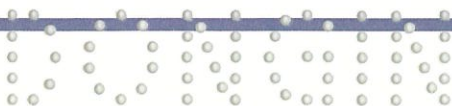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건물명, 층, 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0 하늘마을 제207동 제6층 제606호	
도로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	
이용상황	아파트	
사용승인	2007.11.13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건물규모	20층	
대상물건 면적(㎡) (일괄)	전유	84.65
	공용	42.2339 (지하주차장 등)
	대지권	56.5529

4. 감정평가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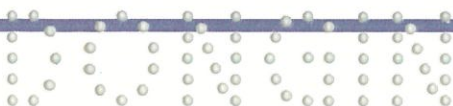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에 의거함.

- ②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액배분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토지, 건물배분비율표를 참조하여 구분건물평가명세표상에 배분금액을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③ 본건은 현장조사시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내부현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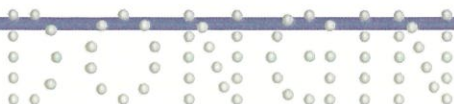
(1)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 적용이 적절치 않고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려워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2)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음.

$$\text{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층/호	용도	면적(m ²)		거래가액 (원/전유m ²)	거래시점	비고
				전유	대지			
#1	중산동 1000	15층/1500호	아파트	84.65	56.5529	425,000,000 (@5,020,673)	2024.06.10	-
#2	중산동 1000	8층/800호	아파트	84.72	56.5996	420,000,000 (@4,957,507)	2024.09.05	-
#3	중산동 1000	1층/100호	아파트	84.72	56.5996	398,000,000 (@4,697,828)	2024.08.14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동일한 단지 내의 유사 거래사례로서 본건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2>을 선정함.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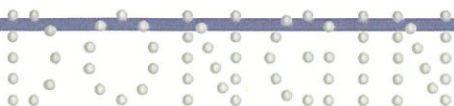
(4) 시점수정

본건의 시점수정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평가하고 있는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거래시점 적용지수 (2024.08)	기준시점 적용지수 (2025.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93.3	93.9	1.00643 (0.643%)

※. 거래시점 : 2024.09.05., 2024년 08월 지수를 적용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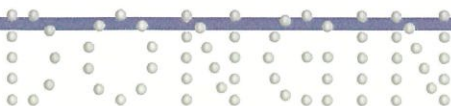
기준시점 : 2025.03.12.,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이므로 2025년 01월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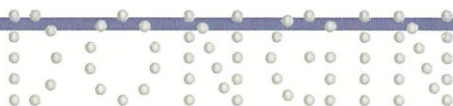
요인구분	세부항목	비교치	비고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등함.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 요인	층별 효용	1.00	대등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그 밖의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 계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일련 번호	면적(m ²)	사례단가 (원/전유m ²)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전유m ²)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84.65	4,957,507	1.00	1.00643	1.000	4,989,384	422,351,356	422,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참고가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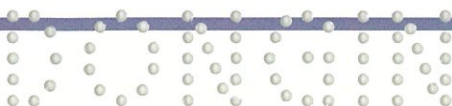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가격수준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가격수준은 전유면적당 5,000,000원/m ² 내외 수준으로 조사됨.
------	---

2. 인근 평가전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호	용도	면적(m ²)		평가액 (원/전유m ²)	평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전유	대지			
(1)	중산동 1000	아파트	84.72	56.55	411,000,000	2024.09.20	법원 경매
	200동/ 1층 100호				(@4,851,000)	2007.11.13	
(2)	중산동 1000	아파트	84.65	56.55	415,000,000	2024.05.27	법원 경매
	200동/ 6층 600호				(@4,903,000)	2007.11.13	
(3)	중산동 1000	아파트	84.72	56.55	431,000,000	2024.01.03	법원 경매
	200동/ 12층 1200호				(@5,087,000)	2007.11.13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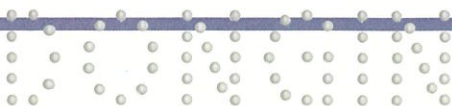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가	평가대상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유면적(m ²)	대지권(m ²)		
	중산동 1700 하늘마을 제207동 제6층 제606호	84.65	56.5529	422,00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참고사항

1. 아파트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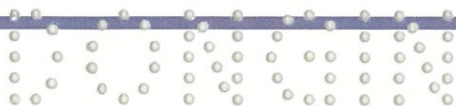
아파트의 최종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전국		5	5	5	5	6	4	6	4	6	4	7	3	8	2
서울	5층이내	7	3	7	3	7	3	7	3	7	3	8	2	9	1
	6~15층	6	4	7	3	7	3	7	3	7	3	8	2	9	1
	16~20층	6	4	7	3	7	3	7	3	7	3	8	2	9	1
	21~25층	6	4	7	3	7	3	7	3	7	3	7	3	8	2
	26~30층	6	4	6	4	6	4	6	4	6	4	7	3	8	2
	30층 초과	5	5	5	5	5	5	5	5	5	5	6	4	7	3
도심권	5층이내	7	3	7	3	7	3	7	3	7	3	8	2	9	1
	6~15층	7	3	7	3	7	3	7	3	7	3	8	2	9	1
	16~20층	7	3	7	3	7	3	7	3	7	3	8	2	9	1
	21~25층	6	4	6	4	6	4	7	3	7	3	7	3	8	2
	26~30층	6	4	6	4	6	4	6	4	6	4	7	3	8	2
	30층 초과	5	5	5	5	5	5	5	5	5	5	6	4	7	3
동북권	5층이내	6	4	6	4	6	4	6	4	7	3	8	2	8	2
	6~15층	6	4	6	4	6	4	6	4	6	4	7	3	8	2
	16~20층	6	4	6	4	6	4	6	4	6	4	7	3	8	2
	21~25층	6	4	6	4	6	4	6	4	6	4	7	3	8	2
	26~30층	5	5	5	5	5	5	5	5	5	5	6	4	7	3
	30층 초과	4	6	4	6	4	6	4	6	4	6	5	5	6	4
동남권	5층이내	7	3	7	3	7	3	7	3	8	2	8	2	9	1
	6~15층	7	3	7	3	7	3	7	3	8	2	8	2	9	1
	16~20층	7	3	7	3	7	3	7	3	8	2	8	2	9	1
	21~25층	7	3	7	3	7	3	7	3	7	3	8	2	8	2
	26~30층	6	4	7	3	7	3	7	3	7	3	8	2	8	2
	30층 초과	5	5	6	4	6	4	6	4	6	4	7	3	7	3
서남권	5층이내	6	4	6	4	6	4	6	4	6	4	7	3	8	2
	6~15층	6	4	6	4	6	4	6	4	6	4	7	3	8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아파트의 최종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서북권	16~20층	16~20층	6	4	6	4	6	4	6	4	6	4	7	3	7	3	
		21~25층	6	4	6	4	6	4	6	4	6	4	7	3	7	3	
		26~30층	6	4	6	4	6	4	6	4	6	4	7	3	7	3	
		30층 초과	5	5	5	5	5	5	5	5	5	5	6	4	6	4	
	5층이내	5층이내	6	4	6	4	6	4	6	4	7	3	8	2	8	2	
		6~15층	6	4	6	4	6	4	6	4	7	3	8	2	8	2	
		16~20층	6	4	6	4	6	4	6	4	7	3	7	3	8	2	
		21~25층	6	4	6	4	6	4	6	4	7	3	7	3	7	3	
		26~30층	6	4	6	4	6	4	6	4	7	3	7	3	7	3	
		30층 초과	5	5	5	5	5	5	5	5	6	4	6	4	6	4	
		수도권	5층이내	5	5	5	5	5	5	5	5	5	5	6	4	7	3
			6~15층	4	6	4	6	5	5	5	5	5	5	6	4	7	3
	16~20층		4	6	4	6	5	5	5	5	5	5	6	4	6	4	
	21~25층		4	6	4	6	5	5	5	5	5	5	6	4	6	4	
	26~30층		4	6	4	6	4	6	4	6	4	6	5	5	5	5	
	30층 초과		3	7	3	7	3	7	3	7	3	7	4	6	4	6	
경기도	5층이내	5	5	5	5	5	5	5	5	6	4	6	4	7	3		
	6~15층	4	6	5	5	5	5	5	5	6	4	6	4	7	3		
	16~20층	4	6	4	6	4	6	5	5	6	4	6	4	7	3		
	21~25층	4	6	4	6	4	6	5	5	6	4	6	4	7	3		
	26~30층	4	6	4	6	4	6	5	5	6	4	6	4	7	3		
	30층 초과	3	7	3	7	3	7	4	6	5	5	5	5	6	4		
경부역	5층이내	5	5	5	5	6	4	6	4	6	4	7	3	8	2		
	6~15층	5	5	5	5	6	4	6	4	6	4	7	3	8	2		
	16~20층	5	5	5	5	6	4	6	4	6	4	7	3	7	3		
	21~25층	4	6	5	5	6	4	6	4	6	4	7	3	7	3		
	26~30층	4	6	5	5	6	4	6	4	6	4	7	3	7	3		
	30층 초과	3	7	4	6	5	5	5	5	5	5	6	4	6	4		
서해권역	5층이내	5	5	5	5	5	5	5	5	5	5	6	4	7	3		
	6~15층	4	6	4	6	4	6	5	5	5	5	6	4	7	3		
	16~20층	4	6	4	6	4	6	5	5	5	5	5	5	6	4		
	21~25층	4	6	4	6	4	6	5	5	5	5	5	5	6	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아파트의 최종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5대광역시	경원권	26~30층	4	6	4	6	4	6	4	6	4	6	4		5	5
		30층 초과	3	7	3	7	3	7	3	7	3	7	3	7	4	6
	경원권	5층이내	5	5	5	5	5	5	5	5	6	4	7	3	7	3
		6~15층	5	5	5	5	5	5	5	5	5	5	6	4	6	4
		16~20층	5	5	5	5	5	5	5	5	5	5	6	4	6	4
		21~25층	5	5	5	5	5	5	5	5	5	5	6	4	6	4
		26~30층	4	6	5	5	5	5	5	5	5	5	5	5	6	4
		30층 초과	3	7	4	6	4	6	4	6	4	6	4	6	5	5
	경원권	5층이내	4	6	4	6	4	6	4	6	4	6	5	5	6	4
		6~15층	3	7	3	7	4	6	4	6	4	6	4	6	5	5
		16~20층	3	7	3	7	4	6	4	6	4	6	4	6	5	5
		21~25층	3	7	3	7	4	6	4	6	4	6	4	6	5	5
		26~30층	3	7	3	7	4	6	4	6	4	6	4	6	5	5
		30층 초과	2	8	2	8	3	7	3	7	3	7	3	7	4	6
	부역권	5층이내	5	5	5	5	5	5	5	5	5	5	5	5	6	4
		6~15층	5	5	5	5	5	5	5	5	5	5	5	5	6	4
		16~20층	5	5	5	5	5	5	5	5	5	5	5	5	6	4
		21~25층	5	5	5	5	5	5	5	5	5	5	5	5	6	4
		26~30층	5	5	5	5	5	5	5	5	5	5	5	5	6	4
		30층 초과	4	6	4	6	4	6	4	6	4	6	4	6	5	5
	인천	5층이내	4	6	4	6	4	6	5	5	6	4	6	4	7	3
		6~15층	4	6	4	6	4	6	5	5	5	5	6	4	6	4
		16~20층	4	6	4	6	4	6	5	5	5	5	5	5	5	5
		21~25층	4	6	4	6	4	6	4	6	5	5	5	5	5	5
26~30층		4	6	4	6	4	6	4	6	4	6	4	6	5	5	
30층 초과		3	7	3	7	3	7	3	7	3	7	3	7	4	6	
5대광역시	5층이내	4	6	4	6	4	6	5	5	6	4	6	4	7	3	
	6~15층	4	6	4	6	4	6	4	6	5	5	5	5	6	4	
	16~20층	4	6	4	6	4	6	4	6	4	6	5	5	5	5	
	21~25층	3	7	4	6	4	6	4	6	4	6	5	5	5	5	
	26~30층	3	7	4	6	4	6	4	6	4	6	5	5	5	5	
	30층 초과	2	8	3	7	3	7	3	7	3	7	4	6	4	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아파트의 최종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기타도 지역	5층이내	3	7	3	7	4	6	4	6	4	6	4	6	5	5
	6~15층	2	8	3	7	3	7	3	7	3	7	3	7	4	6
	16~20층	2	8	3	7	3	7	3	7	3	7	3	7	4	6
	21~25층	2	8	3	7	3	7	3	7	3	7	3	7	4	6
	26~30층	2	8	3	7	3	7	3	7	3	7	3	7	4	6
	30층 초과	1	9	2	8	2	8	2	8	2	8	2	8	3	7

구분	상세 지역	
서울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경기도	경부권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서해안권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경의권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경원권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동부권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2. 토지·건물 배분내역

구분	배분내역	비고
토지	211,000,000	경기도 경의권 16~20층 (경과년수 17년) 토지 5 : 건물 5
건물	211,000,000	
합계	422,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역(경의중앙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급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0층 내 제6층 제6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11.13.)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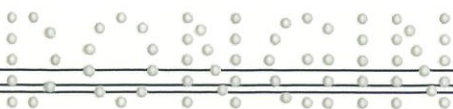
아파트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 및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산2택지개발), 대로1류(폭 35m~40m)(접합),
 종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곡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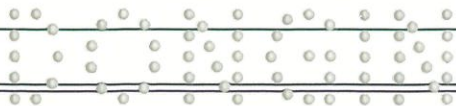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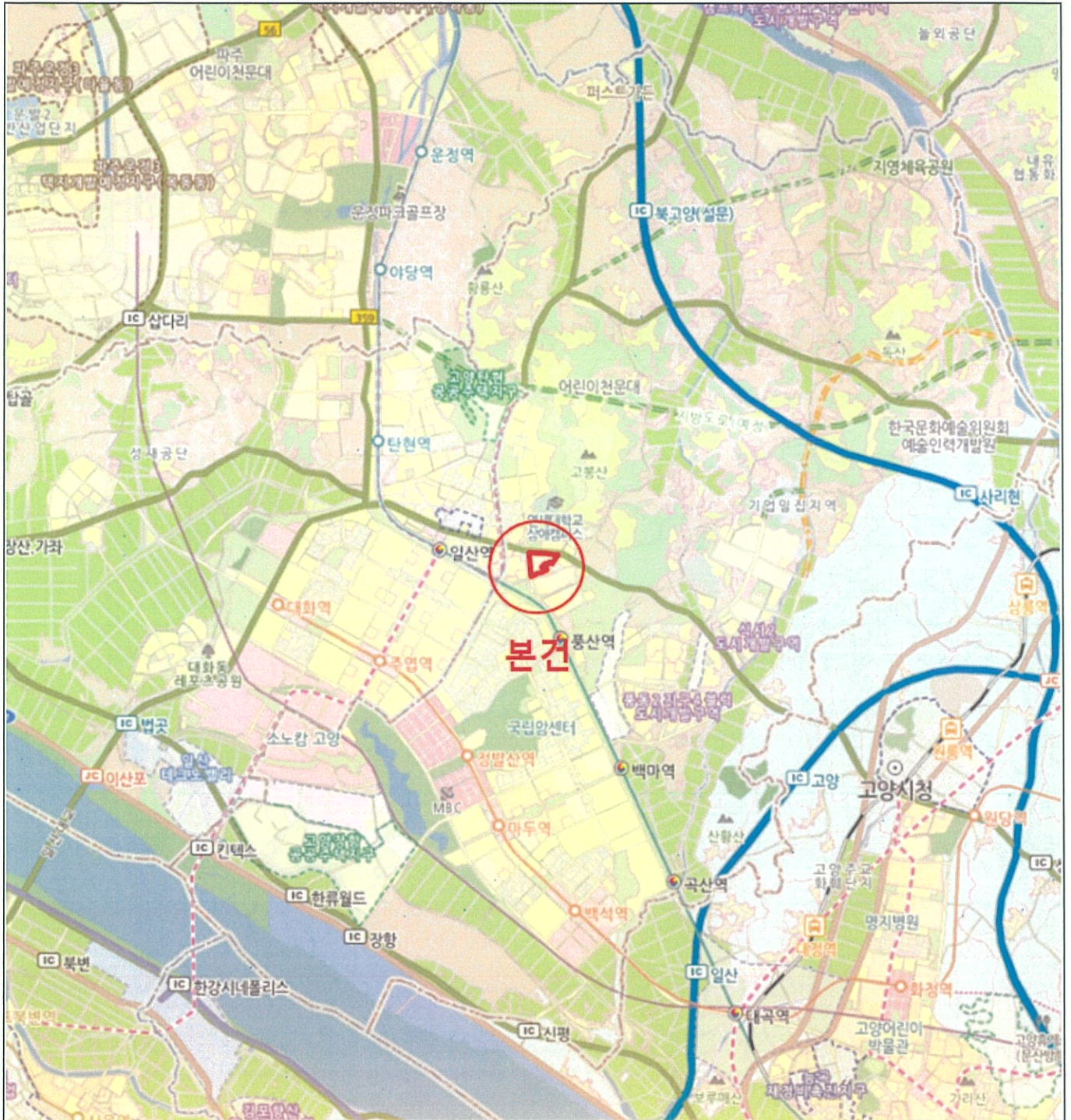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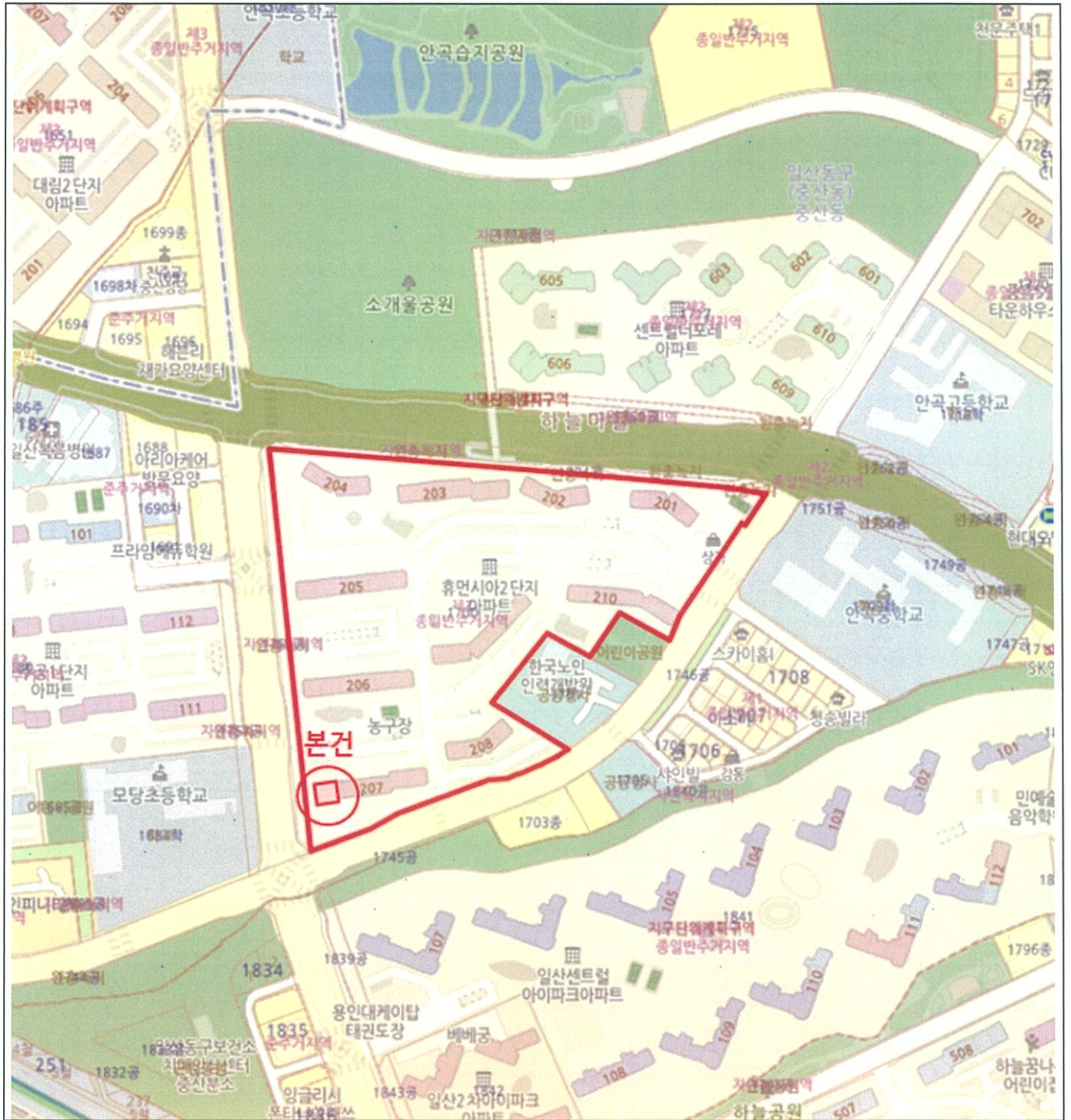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0 하늘마을 제207동 제6층 제606호
------------	--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0 하늘마을 제207동 제6층 제606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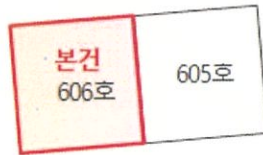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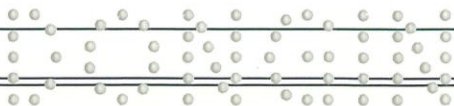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0 하늘마을 제207동 제6층 제606호
-----	--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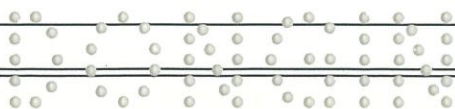
본건 전경



본건 출입구



본건 아파트 단지 출입구



사 진 용 지



주위 환경



주위 환경

